#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안)

2023. 9. 20. (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 2. 감사 기간

2023.10.10.(화) ~ 2023.10.27.(금)[18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 1) 행정안전부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4) 인사혁신처
  - 5) 경찰청
  - 6) 소방청
  - 7) 지방자치단체
    - ① 서울특별시
    - ③ 인천광역시
    - ⑤ 충청남도
    - ⑦ 강원특별자치도
  - 8) 공공기관
    -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⑤ 공무원연금공단
    -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② 대구광역시
- ④ 경기도
- ⑥ 전라북도
-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⑥ 도로교통공단

나. 톤	<b>불회의승인대상기관</b> (국정감사 및 3	도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① 서울경찰청	② 대구경찰청
	③ 인천경찰청	④ 경기남부경찰청
	⑤ 경기북부경찰청	⑥ 충청남도경찰청
	⑦ 전라북도경찰청	⑧ 강원경찰청
	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⑩ 새마을운동중앙회
	⑪ 한국자유총연맹	
다. 일	<b>は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b> (주무	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④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⑤ 지방공기업평가원	⑥ 한국섬진흥원
	⑦ 새마을금고중앙회	⑧ 한국지방세연구원
2)	경찰청 산하	
	① 경찰공제회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3)	소방청 산하	
	① 한국소방안전원	② 대한소방공제회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시설협회

# 4. 감사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대상기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각	딕원
행정안전부	○ 김교흥 위원장 ⑩	△ 강병원 위원 (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인숙 위원 (민)	전문위원	박규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시정리위원회		문진석 위원(민)	전문위원	신문근
   인사혁신처		송재호 위원 (민	행정실장	황준연
   경찰청		오영환 위원 (민)	입법조사관	임채진 윤여문
   소방청			II	황수환
   서울특별시		이해식 위원(민	Ш	전성민
^//르기르//    인천광역시		이형석 위원(민	II	민성철
경기도		임호선 위원(민	П	신홍철
		천준호 위원 (민)	II	김성원
서울경찰청		최기상 위원 (민)		공수정
인천경찰청 		△ 이만희 위원(국)	"	최한슬 최영표
경기남부경찰청		권성동 위원(국)	Ш	최공표 김형래
경기북부경찰청 		김기현 위원(국)	Ш	신강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Ш	이희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용판 위원(국	Ш	박철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 웅 위원(국	행 정 관	백승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박성민 위원(국	"	조예린
공무원연금공단		전봉민 위원(국	주 무 관	이화자
도로교통공단		정우택 위원(국	11	김문주 이현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은희 위원(국	속기주무관	기타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용혜인 위원(기)	정책연구위원	
세마을운동중앙회		이성만 위원(위	위원보좌진	
한국자유총연맹		913C 71C (T)		
= = =				

# 나. 지방감사반

감사반	대상기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충청남도	김교흥 위원장(민)	강병원 위원 (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라북도		문진석 위원 (민)	전 문 위 원	신문근
	충청남도경찰청		이형석 위원 (민)	행정실장	황준연
			임호선 위원 (민)	입법조사관	윤여문
제	전라북도경찰청		천준호 위원 (민)		민성철
			김기현 위원 (국)		신홍철
1			김 웅 위원 (국)		최한슬
			정우택 위원 (국)		최영표
반			전봉민 위원 (국)		신강수
			조은희 위원 (국)		박철환
			이성만 위원 (무)	속기주무관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1인
	대구광역시	이만희 위원 (국)	권인숙 위원 (민)	전 문 위 원	박규찬
	강원특별자치도		오영환 위원 (민)	입법조사관	임채진
	대구경찰청		이해식 위원 (민)		황수환
ונד			송재호 위원 (민)		전성민
제	강원경찰청		최기상 위원 (민)		김성원
2			권성동 위원 (국)		공수정
			김용판 위원 (국)		김형래
반			박성민 위원 (국)		이희석
긴 			용혜인 위원 (기)	행 정 관	백승운
				속기주무관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1인

# 5. 국정감사 일정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10. 10.(화)	합동	10:00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공무원연금공단	정부세종청사
10. 11.(수)	※ 자료수집			
10. 12.(목)	합동	10:00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회의실
10. 13.(금)	합동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회 (행안위 회의실)
10. 14.(토) 10. 15.(일)	휴 일			
10. 16.(월)	합동	10:00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시청 감사 종료후	서울경찰청	시경 회의실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10. 17.(화)	합동	10:00	경기도청	도청 회의실
		도청 감사 종료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도경 회의실 (경기남부)
10. 18.(수)	※ 자료수집			
	합동	10:00	인천광역시	시청 회의실
10. 19.(목)		시청 감사 종료후	인천경찰청	시경 회의실
10. 20.(금)	※ 자료수집			
10. 21.(토) 10. 22.(일)	휴 일			
	감사1반	10:00	충청남도	도청 회의실
10 22 (21)		도청 감사 종료후	충청남도경찰청	도경 회의실
10. 23.(월)	감사2반	10:00	대구광역시	시청 회의실
		시청 감사 종료후	대구경찰청	시경 회의실

일 자	반구성	시간	대 상 기 관	비 고 (감사장소)
10. 24.(화)	감사1반	10:00	전라북도	도청 회의실
		도청 감사 종료후	전라북도경찰청	도경 회의실
	감사2반	10:00	강원도	도청 회의실
		도청 감사 종료후	강원경찰청	도경 회의실
10. 25.(수)	※ 자료수집			
10. 26.(목)	합동	10:00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국회 (행안위 회의실)

#### 6. 감사요령

#### 가. 감사진행원칙

-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등 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시찰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질의도중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교섭 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결로 정한다.
- 그 밖에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나. 감사방법

-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 제출요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장검증 또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중점을 두도록 함.

## 7. 보고 및 서류등의 제출 요구

- 보고 요구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 보고한다.
    - 2023년도 업무현황
    -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 2022년도 및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2022년도 국정감사 미수감기관의 경우, 마지막 수감연도 사항)
-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시원감사·지체감사 시 지적된 시항 및 시정조치결과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보고자료를 모든 위원실에 국정감사 전에 제출한다.

#### ○ 서류등의 제출 요구

- 위원회 의결에 의한 요구
  - 각 감사위원은 서류등의 제출을 위원회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의결 1일 전까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한다.
-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등 제출요구
  - 위원회 의결 이후에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한 서류등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장 명의로 피감기관 감사 7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다.
- 서류등 제출 거부에 대한 소명이나 성명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다.

####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출석요구의 철회는 위원회 의결로 한다.
- 증인 채택 후 감사 대상기관의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 변경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하 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그 직 무를 대리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
- 증인 채택 후 감사 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임명된 자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증인 등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 8. 감사 진행 순서

- ① 감사개시 선언
- ② 감사반장 인사말씀
- ③ 증인선서
- ④ 감사대상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 ⑤ 업무현황보고 청취
- ⑥ 질의 및 답변 (또는 증인 신문 및 증언)
- ⑦ 감사종료 선언

##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정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